

자비 부담 진료비 청구 및 추심 정책(CA)

면책 조항

PDF 면책 조항 법적 고지: 본 PDF는 2026년 3월 4일에 요청되었습니다. PDF는 공식 문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공식 문서의 내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ucidoc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 혹은 적절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Lucido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 유지 관련 법적 고지: 본 PDF 파일은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수신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오직 지정된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밀로 전송됩니다. 본 문서를 잘못 수신한 경우, 해당 문서의 사용, 복제, 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인이 해당 수신자가 아닌 경우, 즉시 발신인에게 통지하고 이 파일을 영구히 삭제하십시오.

결재

- 위원회 결재: 재정 위원회 결재일: 2025년 9월 25일
 - 위원회 결재: 비임상 정책 심사팀 - 수익 주기팀 결재일: 2025년 7월 24일
 - 위원회 결재: AH 시스템 이사회 결재일: 2025년 11월 18일
-

개정 인사이트

문서 ID:	13863
개정 번호:	4
소유자:	Robert Walton, 환자 재정 서비스 부문 선임 이사
공식 개정일:	2025년 11월 21일

개정 메모:

현행 정책과 2025년 아테네법 개정안 간의 차이점을 수정합니다.

표준 정책: 자비 부담 진료비 청구 및 추심 정책(CA)

정책 요약/취지:

Adventist Health는 헌신적인 의료 전문인들-의사, 간호사, 기사, 관리진, 신탁 관리자, 자원봉사자 및 기타 여러 헌신적인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개개인들은 지역 사회의 보건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구성원의 직업 역량은 신뢰와 연민 위에 세워진 특별한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 신뢰와 선의를 통해, Adventist Health와 환자는 서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Adventist Health의 자비 부담 진료비 청구 및 추심 정책을 설명합니다. 또한 Adventist Health가 환자 채무를 추심 대행업체 및 기타 외부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정책의 취지는 해당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정의

- 자선 진료** - 환자 또는 보증인이 Adventist Health에서 제공한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환자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제공되는 무료 진료를 말합니다.
- 추심 대행업체** - Adventist Health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추심 대행업체, 채무 매입자(아래 정의 참조) 또는 기타 양수인을 말합니다.
- 채무 매입자** - 추심을 목적으로 상각 처리된 소비자 채무를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직접 추심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추심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진료** - 현금 결제, 즉시 결제, 선결제 시 또는 특정 환자군(예: 자비 부담 환자)에게 제공되는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납부 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 추심 조치(Extraordinary Collection Action, ECA)** - Adventist Health가 진료비 청구 대금 수령과 관련된 개인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로, 추심을 위해 환자의 채무를 다른 회사에 매각,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의 연기 또는 거부, 환자의 임금 압류, 환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기타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 응급 의료** - Adventist Health 응급 의료 처치 및 노동법 정책(EMTALA) #AD-06-019-S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진료를 의미합니다.

7. **필수 생활비(Essential Living Expenses, ELE)** - 필수 생활비에는 임대료 또는 주택 할부금 및 유지비, 식비, 가계용품비, 세탁 및 청소비, 공과금 및 전화 요금, 의류비, 의료 및 치과 진료비, 보험료, 학교 수업료 또는 보육비,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교통비 및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할부금 포함), 그리고 기타 특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8. **특별 추심 조치(Extraordinary Collection Action, ECA)** - ECA란 병원 시설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진료에 대한 책임을 수락했거나 수락해야 하는 환자 또는 기타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취해지는 법적 또는 사법적 조치입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추심 목적으로 환자의 채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행위 또한 ECA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예로는 환자의 임금 압류, 신용에 불리한 정보 보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의 연기 또는 거부 등이 있습니다.
9. **응급 의료 - Adventist Health** 응급 의료 처치 및 노동법 정책(EMTALA) #AD-06-019-S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진료를 의미합니다.
10. **필수 생활비(Essential Living Expenses, ELE)** - 필수 생활비에는 임대료 또는 주택 할부금 및 유지비, 식비, 가계용품비, 세탁 및 청소비, 공과금 및 전화 요금, 의류비, 의료 및 치과 진료비, 보험료, 학교 수업료 또는 보육비,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교통비 및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할부금 포함), 그리고 기타 특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11. **가족 -**
 - a. **18세 이상인**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동거인,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가 포함되며, 동거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b. **18세 미만** 또는 **18~20세** 부양 자녀의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보호자 역할을 하는 친척 및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친척의 **21세 미만**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가 포함됩니다.
12. **FAP** -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Financial Assistance Policy)입니다.
13. **연방 소득세 신고서** - 과세 소득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국세청(IRS) 양식입니다. IRS 양식은 반드시 IRS에 보낸 서명 및 일자를 기입한 양식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14. **연방 빈곤선(FPL)** - 미국 보건복지부가 법적 권한에 따라 연방 관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빈곤 가이드라인입니다.
15. **재정 지원** - Adventist Health의 FAP에 명시된 자선 진료와 감면 진료를 말합니다.
16. **선의의 견적** - 자비 부담 환자 및 무보험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항목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항목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산출된 예상 청구액입니다.
17. **고액 의료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 a. Adventist Health 시설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환자 가구 소득의 **10%** 또는 지난 **12개월** 가구 소득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b. 환자가 지난 **12개월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환자 가구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8. **가구 소득** - 모든 가족 구성원의 누적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총임금, 급여, 팁 등
- b. 실업급여, 산재 보험,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 공공 지원, 재향군인 급여, 유족급여, 연금 또는 퇴직 소득
- c. 이자, 배당금, 로열티, 임대 부동산 소득, 유산 및 신탁 소득, 배우자 부양비, 자녀 양육비, 가구 외 원조 및 기타 다양한 소득원

19. **의학적 필요** - 어떤 서비스가 (a) 생명을 보호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b) 심한 통증을 완화하거나, (c) 질병, 부상, 상태 또는 질환, 그리고 질병, 부상, 상태 또는 질환의 증상을 예방, 진단 또는 치료하는 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그리고 (d) 통용되는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학적 필요'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본인 부담 비용** - Medicare 본인 부담금 또는 Medi-Cal 비용 부담 같이 보험이나 의료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되지 않는 모든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21. **환자 재정 서비스(Patient Financial Services, PFS)** - 청구, 추심 및 결제 처리를 담당하는 Adventist Health의 부서를 말합니다.

22. **장기 분할 납부 제도** - Adventist Health에서 제공하는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납부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납부를 말합니다.

23. **적정 분할 납부 제도** - 환자의 월 가구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위 정의 참조)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월 납부액을 적용하는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24. **자비 부담 환자** - 건강 보험사, 의료 서비스 플랜, Medicare 또는 Medicaid로부터 제3자 보장을 받지 못하며 응급의가 판단하고 기록한 바에 따라 산재 보험, 자동차 보험 또는 기타 보험의 목적상 보상 대상이 아닌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자비 부담 환자에는 자선 진료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5. **제3자 보장** -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일반 배상 책임 보험 등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비하여 구매하는 보험 증권 또는 기타 선불 보장 상품을 말합니다.

26. **무보험 환자** - 받은 서비스를 충당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말합니다.

27. **과소보험 환자** - 받은 서비스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보험이나 선불 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말합니다.

정책:

1. 기습 청구 금지

- a. **선의의 견적:** 법률에 따라, 의료 시설 및 제공자는 자비 부담 환자와 무보험 환자에게 해당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에 대한 선의의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장비, 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환자는 또한 요청을 통해서도 선의의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 영업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예약된 서비스의 경우, 선의의 건적은 예약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ii.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예약된 서비스의 경우, 선의의 건적은 예약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iii. 환자가 해당 시설 또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선의의 건적보다 \$400 이상 많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b. 고지 및 동의: 환자가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네트워크 외 시설 또는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및 제공자는 네트워크 외 청구에 대한 고지와 잔액 청구에 대한 동의('고지 및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외 환자가 **Adventist Health** 시설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고지 및 동의를 제공받고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 i. 서비스가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최소 72시간 전에 고지 및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 72시간 이내에 예약된 경우, 고지 및 동의는 서비스 제공 당일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iii. 서비스가 당일 예약된 경우, 고지 및 동의는 서비스 제공 후 3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c. 선의의 건적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질문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www.cms.gov/nosurprises/consumers를 참조하거나, FederalPPDRQuestions@cms.hhs.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1800-985-305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 절차

- a. 제3자 지불인 청구: 건강 보험이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 **Adventist Health**는 환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제3자 지불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청구를 진행합니다.
- b. 보험 가입 환자에 대한 환자 부담금 청구: 건강 보험이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 **Adventist Health**는 보험 급여 명세서(EOB)에 따라 계산되고 제3자 지불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 c. 무보험 환자에 대한 청구: 무보험 환자의 경우, **Adventist Health**는 해당 환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d. 제3자 상환: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환자는 자신이 받은 병원 서비스에 대해 제3자 지불인이 환자 또는 보증인에게 직접 송금한 모든 환급금을 **Adventist Health**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가 부상 관련 의료 서비스 또는 치료비 지급을 포함하는 제3자 책임 소송을 통해 법적 합의금, 판결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증인은 해당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된 금액까지 제공된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Adventist Health**에 상환해야 합니다.
- e. 항목별 명세서 요청: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계정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지원 정보 및 신청

- a. **Adventist Health**는 **Adventist Health** 병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에게 재정 지원 정책 요약본을 다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Adventist Health**에 문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재정 지원에는 자선 진료, 감면 진료 또는 기타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b.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 및 신청서는 병원 등록 구역을 방문하거나 (844) 827-5047로 전화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Adventist Health**의 농촌 보건소 할인 프로그램 및 관련 신청 양식에 대한 설명은 **Adventist Health** 청구서 납부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ventist Health**는 본 정책을 각 병원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1,000명 또는 5% 중 더 적은 수가 사용하는 각 언어로 번역하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역 또는 대체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c. **Adventist Health** 및 **Adventist Health**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주심 대행업체, 채무 매입자 또는 기타 양수인('주심 대행업체')은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 분할 납부 제도를 협의하거나 합리적인 금액의 정기 부분 납부를 통해 미납금을 성실히 상환하려는 환자에 대해 주심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d. 환자가 자선 진료 또는 감면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Adventist Health**는 자격 여부 및 납부해야 할 채무액을 결정할 때만 환자의 소득 정보를 사용합니다. **Adventist Health**는 이 정보를 주심 활동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e. 재정 지원 결정 후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Adventist Health**는 해당 초과 납부액을 **Adventist Health**가 수령한 날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85.010조에 규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Adventist Health**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초과 납부액이 \$5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dventist**는 30일 이내에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환자에게 최초 청구 당시 재정 지원 자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i) 병원 또는 주심 대행업체에 대한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ii) 당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환자의 채무가 매각된 경우, **Adventist Health**는 환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f. **Adventist Health** 시설은 환자 또는 보증인이 **Medicaid/Medi-Cal**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주심 활동을 중단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결정에 이의제기에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기관에서 해당 개인이 신청한 보장에 대한 수혜자격이 없거나 또는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주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장기 분할 납부 제도

- a. **Adventist Health**와 해당 주심 대행업체는 무보험 환자와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 가입 환자에게 환자 부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계약('장기 분할 납부 제도')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b. 장기 분할 납부 제도 조건: **Adventist Health**는 또한 환자 부담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환자들을 위해 장기 분할 납부 제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 분할 납부 제도는 **Adventist Health** 환자 재정 서비스 부서와 환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환자의 가구 소득, 필수 생활비, 환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건강 저축 계좌의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 분할 납부 제도에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Adventist Health**와 환자가 장기 분할 납부 제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환자의 월 가구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월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적정 분할 납부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 c. 장기 분할 납부 제도 무효화 선언: 환자가 **90일** 동안 연속으로 모든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Adventist Health**는 장기 분할 납부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 납부 제도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전에, **Adventist Health** 또는 해당 추심 대행업체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로 서면 통지를 발송하여 장기 분할 납부 제도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알리며 재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Adventist Health** 또는 **Adventist Health**를 대리하는 추심 대행업체는 장기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한 재협의를 시도합니다. 장기 분할 납부 제도가 무효로 선언되고 환자에게 최초 청구서가 발송된 지 **180일**이 경과한 경우 **Adventist Health** 또는 해당 추심 대행업체는 특별 추심 조치(아래 정의 참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추심 절차

- a.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본 '자비 부담 진료비 청구 및 추심 정책'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Adventist Health**와 해당 추심 대행업체는 미납된 환자 잔액을 추심하기 위해 특별 추심 조치를 포함한 추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dventist Health**와 해당 추심 대행업체는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납금을 성실히 상환하려는 환자에 대해 추심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Adventist Health**는 어떠한 의료 채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b. 특별 추심 조치('ECA')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개인의 채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매각(단, 예외는 있음)
 - ii. 개인이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이전 제공 진료에 대한 하나 이상의 청구서를 미납함으로 인해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응급 의료 제외)를 연기 또는 거부하거나, 제공 전에 납부를 요구
 - iii. 일부 유치권, 부동산 압류, 가압류/압수, 민사 소송 개시, 개인에 대한 재산 가압류 영장 발부, 개인의 임금 압류 등 연방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특정 조치
- c. ECA에는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에 의료 채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d. ECA에는 병원이 치료를 제공한 개인 상해로 인해 개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합의금 또는 타협금에 대해 주법에 따라 병원이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 **ECA 개시:** 최초 청구서가 환자에게 제공된 후 최소 180일이 경과하고 **Adventist Health**가 해당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환자가 청구 시도 또는 재정 지원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경우, **Adventist Health**는 시설 재정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미납 잔액을 추심하기 위해 추심 대행업체에 환자의 청구 건을 넘겨서 **ECA**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dventist Health**가 미납 청구서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ECA**를 개시하기 전에 여러 진료 건에 대한 개인의 미납 청구서를 합산하는 경우, 합산에 포함된 가장 최근 진료 건에 대한 최초 퇴원 후 청구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ECA** 개시를 유보합니다. 환자가 청구 건에 대한 보장 적용 관련 이의 제기를 진행 중이며 해당 이의 제기의 진행 상황에 대해 **Adventist Health**와 소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Adventist Health**는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환자의 미납 청구 건을 추심 대행업체에 넘기지 않습니다. **Adventist**는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납금을 성실히 상환하려는 환자에 대해서는 **ECA**를 개시하거나 계속하지 않습니다.
- f. 추심 대행업체는 **ECA**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i. 추심 대행업체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설의 재정 담당자에게 개별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진료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환자 또는 보증인이 해당 서비스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는 추심 대행업체의 관련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ii. 해당 시설의 재정 담당자는 각 개별 법적 조치를 서면으로 결재해야 합니다. 이 권한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iii. 시설은 법적 조치를 위해 서명된 승인서 사본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전자 **PFS** 환자 계정 메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iv. 어떠한 경우에도 추심 대행업체는 환자 또는 보증인의 재정적 여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대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v. 이러한 모든 조치는 통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추심 조치 시행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g.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자선 진료 또는 감면 진료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 추심 대행업체는 미납 병원비를 추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 압류를 시행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h. 필수 고지 사항: 대금 수령을 위해 **ECA**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Adventist Health**는 환자에게 다음 정보가 포함된 고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i. 추심 기관에 위탁되거나 매각되는 청구서의 서비스 날짜
 - ii. 청구서가 위탁되거나 매각되는 법인의 명칭
 - iii. 환자가 **Adventist Health**로부터 항목별 병원 청구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

- iv. 서비스 당시 병원에 기록된 환자의 건강 보험 이름 및 플랜 유형, 또는 병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
- v. **Adventist Health**의 재정 지원 신청서
- vi. 환자에게 재정 지원 신청에 대한 고지가 처음 발송된 날짜, 환자에게 재정 지원 신청서가 발송된 날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

i. 추심 대행업체

- a. **Adventist Health**는 필요에 따라 외부 추심 대행업체를 통해 **ECA**를 진행합니다. **Adventist Health**를 대신하여 미납 환자 청구서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추심 대행업체는 동일한 채무 추심 기준을 충족하고 본 **Adventist Health** 자비 부담 진료비 청구 및 추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b. **Adventist Health**가 환자의 채무를 채무 매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i. 채무 매입자는 제3자 지불인으로 인해 잔액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환자가 자선 진료 또는 재정 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계좌를 반환하고 **Adventist Health**가 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 문구를 매매 계약에 포함합니다.
 - ii. 채무 매입자가 환자 채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합니다(단, 보건안전법 § 12744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초 채무가 발생한 병원 또는 면세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채무 매입자가 다른 법인에 매각되거나 합병되는 경우는 예외).
 - iii. 채무 매입자가 환자 채무에 대해 이자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 iv. 채무 매입자가 재정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로부터 채무 추심업체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 c. **Adventist Health**는 각 추심 대행업체의 실적을 최소한 연 1회 평가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추심 대행업체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 및 불만 사항도 포함됩니다. **Adventist Health**는 추심 대행업체의 활동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며 이를 문서화합니다.
- d. 또한, **Adventist Health**는 추심 대행업체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Adventist Health**의 정책을 따르고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 e. **Adventist Health**는 환자가 **Adventist Health**에 갚아야 할 금액과 관련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Adventist Health**에서 제기한 소송 관련 문서
- ii. 환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Adventist Health**가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체결하는 계약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록 및
- iii. (i) **Adventist Health**가 환자 채무를 양도하거나 매각한 채무 추심업체 및 (ii) **Adventist Health**가 병원을 대신하여 환자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의 명단(매년 갱신)
- f. 또한, 의료 채무의 양도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병원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는 양수인 또는 매수인 및 그 이후의 모든 양수인 또는 매수인이 소송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6. 문서

- 1. 기밀 재정 지원 신청서
 - 2. 참조 표 - 재정 지원 정책 부록 **A FPL**
-

매뉴얼:
첨부:
(본 문서에서 인용)
www.ftc.gov
<http://www.aspe.hhs.gov/poverty/>
www.ftc.gov
캘리포니아 소재 병원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
캘리포니아 소재 병원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
기타 문서:
(본 문서를 인용)
연방 규정:
기타
인가: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
참고:

ADVENTIST HEALTH
SYSTEM/WEST 정책 소유자:
단체 정책 소유자:
공동 작업:

Robert Walton - 환자 재정 서비스 부문 선임 이사
해당 없음
Amy K Miller - 수익 주기 준법 감시 부문 이사
Brett W Sharp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Cecilia Chowdhury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Cheryl A Brooksher - RevCycle 학습, 통합 및 프로젝트 부문 선임 이사
Christine D Hancock - 수익 건전성 부문 이사
Colleen A Fiore - 선임 애플리케이션 분석가
Dina M Brasel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Elizabeth Sanchez-Schinina - 애플리케이션 전문가
Elvina Mnatsakanyan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Erik Johansen - 환자 재정 서비스 부문 이사
Jacalyn Liebowitz - 시스템 최고 간호 책임자
Jessica M Hoops - 리스크 분석가
Jessica Marquez - 수익 건전성 부문 시스템 관리자 - CDM 및 표준
Jodi L Oldes - 규제 전문가
Kyle Tomer - 선임 보고 및 데이터 분석가
Lori Esquivel - 환자 원무 부문 이사
Luz Isabel I Rojas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Megan T Pham - 수익 건전성/수익 회수 부문 행정 이사
Michael W Cantyne - 수익 건전성 부문 시스템 관리자 - CDM 및 표준
Nirali A Desai - 인증, 규제 및 라이선싱 부문 시스템 이사
Patricia C Romero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Peter H Morgan - 준법감시인
Sarah M Janosz - 정책 및 절차 부문 프로그램 관리자
Tammie S Milligan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Victoria Y Luis - 수익 건전성 부문 다기관 관리자

결재자:
ADVENTIST HEALTH
SYSTEM/WEST:
ADVENTIST HEALTH
SYSTEM/WEST 개인:
단체:
단체 개인:
검토일:
개정일:
차기 검토일:
결재 경로:

(07/24/2025) 비임상 정책 심사팀 - 수익 주기팀, (09/25/2025) 재정 위원회, (11/18/2025) AH 시스템 이사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22년 9월 27일, 2023년 3월 31일, 2024년 12월 9일, 2025년 2월 21일, 2025년 11월 21일
2028년 11월 20일
비임상

본 문서의 종이 사본은 최신이 아닐 수 있으며 공식 목적의 경우 이 문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버전은 Lucidoc의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ucidoc.com/api/auth/login?org=10528&returnto=%2Fcgi%2Fdoc-gw.pl%3Fref%3Dahrsvl%3A13863%244>.